

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3(장애인 등록 취소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(장애인 등록 취소)에 의거 장애 정도 재판정 불응으로 인한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및 보관 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8월 21일

파 주 시 공 고



1. 공 고 명 :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26. 8. 21. ~ 2026. 9. 5. (15일간)
3. 공고방법 : 파주시 및 전국 시·군·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4. 공고대상 및 내용

처분대상	성 명	김O학	생년월일	*****-1
	주 소	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로 *5, *1*동 **0*호		
처분 원인		장애 정도 재판정 불응		
처분 내용		장애인등록 취소		
처분 일자		2026. 08. 03.		

5. 유의사항

- 가. 장애인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2026. 9. 11.(금)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, 반납하지 않을 경우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나. 장애인등록 취소 이후에 등록증을 사용하는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
- 다.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6. 문 의 처 : 경기도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 (☎ 031-940-8411)